

분류기호 분서번호	문재35300-577	기 안 용 지 (전화: 773-3674)		시행성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결재		
시행일자	'90.11.	1990.11.15		
보수기관	부처장	참조기관 빙부담당관	부처장서동제	
	문화관광국장		1990.11.15	
	문화재과장		승계관	
기연책임자	연익음	발		
상수습 수신 감호	과 안 참 조	발신방의	33435 발송 1990.11.16 서울특별시	
제 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및 정정			
(제 1 안)				
수 신	: 네부결재			
제 목	: 동 권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기고시한 문화재 보호구역및 소재지.지번에 착오가 있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보호구역 지정및 정정대상 문화재				
0. 유형문화재 제74호 손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153,777m ²				
0. 유형문화재 제39호 약사사 3층석탑및 제40호 약사사 석불				

지변 정정

0. 유명문화재 제55호 정간이공 신도비 소재지 지변 정정

나. 문화재및 보호구역 목록내용 : 별 첨

다. 근거 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8조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함.

참 부 : 1. 고시(안) 1부.

2. 지정 요청 공문 1부.

3. 문화재 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제 2 인)

수 신 : 문화재 관리국장

참 조 : 문화재1과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및 정정 통보

1. 서울특별시 유명문화재 제74호, 39호, 40호, 55호와 관련, 첨부

와 같이 지정및 정정하연게 보고합니다.

가. 지정및 정정목록 : 별 첨

참 부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및 정정내용 1부. 끝.

(제 3 안)

수 신 : 공보관

제 목 : 시보 게재 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하였기에
재산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자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고시문 2부. 끝.

(제 4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서울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정정통보

1.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9조에 의거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 및 정정고시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라며, 문화재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및 정정내용 : 별 첨

첨 부 : 지정 및 정정내용 1부. 끝.

수신처 : 지적과, 세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시설계획과, 건축지도과.

공원과

2366

(제 5 안)

결재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문화공보실장

제 목 : 동 권

1. 서울시 지방문화재 제74호, 39호, 40호, 55호와 관련임.

2. 위 문화재 보호구역및 소재지가 별첨 내용과 같이 지정및 정정 고시

하였음을 통보하니,

3. 관내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관련과및 관할동에 통보하여 관계공부를

기록 정리할 것이며, 보호구역내 또는 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화재 보

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바람.

가. 지정및 정정내용 : 별 첨

첨 부 : 보호구역지정및 정정내용 1부. 끝.

수신처 : 구로, 강서, 노원구청장

(제 6 안)

수 신 : 손흥안씨 양도공파 총회

제 목 : 보호구역 지정 통지

1. 병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4호 손흥안씨 양도공판
모역의 보호구역 지정은 첨부 목록과 같이 지정 고시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화재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정 목록 1부. 끝.

(제 7 안)

수 신 :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사 주지 귀하

제 목 : 문화재 보호구역 지번 정정 통지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신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 제40호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바 있으나, 지번에 착오가 있어 정정 고시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정정 목록 1부. 끝.

(제 8 안)

수 신 : 예안여씨 이조판서 공파 총회

제 목 : 문화재 지정 소재지 정정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368

2. 귀하께서 소유하신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5호 정경의공 신도비 소재

철재

지 주변을 첨부와 같이 정정 고시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정 목록 1부. 끝.

※. 문화재및 문화재 보호구역 목록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및 변경내용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소유지	비고	
유형문화재	제 74 호	순흥안씨 선묘공파 묘역	충청남도 서흥군	2126.1	151,758㎡(4.5)	순흥안씨	지정고사
			충청남도 서흥군	54.2	1,104㎡	순흥안씨	
			충청남도 서흥군	55	413㎡	순흥안씨	
			충청남도 서흥군	704.45	502㎡	순흥안씨	
			충청남도 서흥군	총계	153,777㎡		
유형문화재	제 39 호	익사사 3층석탑	충청남도 서흥군	332.1	757㎡	대원불교	지정고사
			충청남도 서흥군	332.1	3,263㎡	대원불교	변경고사
			충청남도 서흥군	332.2	2,362㎡	대원불교	
			충청남도 서흥군	332.3	281㎡	대원불교	
			충청남도 서흥군	332.9	962㎡	대원불교	
충청남도 서흥군	총계	4,355㎡					

문화재 소재지 지정 변경내용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소유지	비고	
유형문화재	제 55 호	정선이공 선묘비	충청남도 서흥군	762.2	1,150㎡	예산이씨 이조판서 공파	소재지 지번 정선고사

2/ 10/11/ 33X
W
M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3 호

서울특별시 지방분회제 방호구역 지정 및 지방분회

분회제 방호입지 제 8호 및 서울특별시 분회제 방호구역 제 9호 규정(이하 다음과 같은 서울특별시 지방분회제 방호구역은 지정의 관할, 분회제 1개에 지방분회제)인 서울특별시 지방분회제 방호구역 제 10호 규정(이하 같은)에 의한다.

1990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방분회제 방호구역 지정 및 지방분회

구분	지정번호	분회제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지방분회제	제 74 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구	2,126.1	131,758㎡	영등포구	지방분회
			영등포구	54.2	1,104㎡	영등포구	
			영등포구	55	413㎡	영등포구	
			영등포구	704.45	502㎡	영등포구	
지방분회제	제 39 호	영등포구	영등포구	332	737㎡	영등포구	지방분회
			영등포구	332.1	2,263㎡	영등포구	
			영등포구	332.2	2,361㎡	영등포구	
			영등포구	332.3	962㎡	영등포구	

문화재 소재지 지번 정정내용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유형문화재	제 55 호	청간여관 강도비	한국 불교승 762 2	1,150㎡	대산이씨 대묘원서 공파 종화	소재지 지번 정정고지